

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(스마트공방)사업 추가 모집 공고

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전환을 위해 「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6월 15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

※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(스마트공방)사업 모집 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-313호, 4.30~6.2)를 통해 신청한 소공인은 본 모집공고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.

1. 사업개요

가. (사업목적)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

나. (지원대상) 『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에 따른 소공인

* 2개 이상 사업체(법인 포함) 운영 시,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

다. (지원규모) 600개사 내외

라. (사업기간) 협약체결일 ~ '26. 12. 20

* (협약기간) 협약체결일부터 5년

마. (지원유형)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

구분	내용
개별형	소공인 단독으로 스마트장비 및 시스템 도입으로 제조공정 혁신 추진
클러스터형	동일·유사업종 또는 동일지역 내 소공인 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* 클러스터별 소공인 10개~20개사 및 1개 운영기관으로 구성

바. 지원내용

- **(하드웨어)**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
- **(소프트웨어)** SaaS(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) 또는 라이선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

* 단, 소프트웨어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
**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의 10%(최대 600만원) 이내로 한정하되, 잔여금액은 스마트장비 구매비용으로 사용 가능

사. (지원금액) 국비 60%, 자부담비 40%

총 사업비	국비(60%)	자부담(40%)	
		현금(20% 이상)	현물*(20% 이하)
6,000만원	최대 3,600만원	최소 1,200만원	최대 1,200만원

* 현물은 과제책임자(대표자, 기존직원 등)의 직전년도 인건비(2025년 연봉)로 계상 가능

<지원불가 사항>

- ▶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지게차 등) 및 승용·화물차 등 차량 일체
- ▶ 중고제품
- ▶ PC, 노트북, 태블릿, 모니터, TV 등 제조용도 외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
- ▶ 최초 제조시 내장된 시스템과 중복되는 제조관리시스템(MES), ERP 등 운영·관리 관련 시스템
- ▶ 장비 설치 및 운송비, 네트워크 공사비,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

* 기타 지원불가 여부 및 항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판단에 따름

2. 지원유형 및 대상

개별형

□ **(지원분야)** 각 분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함

- ① **(공정기술형)** 주조·금형·가공·용접 등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으로,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

※ (신청요건) 직전년도('25년) 매출액 2억원 미만 또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

- ② **(생활문화형)** K-소비재 4대 중점분야(패션, 뷰티, 식품, 리빙)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

※ (신청요건) 직전년도('25년) 매출액 2억원 미만 또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

클러스터형

- **(지원분야)** 공정기술형·생활문화형 분야에 대하여 동일 또는 이업종 소(상)공인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

분야	사업내용
공정기술형	금속주조, 금형, 절삭가공, 용접 등 공정기술 중심으로 산업 밸류체인 내 협업을 위한 공동 과제 수행
생활문화형	패션, 뷰티, 식품, 리빙 등 생활 소비재 관련 제품 생산 소공인 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

* 클러스터 사업계획서 상 협업·공동과제 내용이 위 사업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운영기관 및 소공인 모두 미선정

- **(신청조건)** * 운영기관이 소공인(10개~20개사) 모집 후 동시 신청

- ① **(운영기관)**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*

* 정관 상 법인설립 목적에 소공인(소상공인) 지원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며, 이외 설립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해석에 따름

** 모집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313호, 4.30~6.2) 시 신청한 운영기관의 경우 최대 인원(20명) 한도에 맞춰 참여 소공인 추가하여 신청 가능(단, 既신청 참여 소공인 교체변경은 불가)

- **(역할)** 클러스터 참여 소공인 발굴, 클러스터 추진 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, 클러스터 특성에 맞는 소(상)공인 연계 사업 추진 등

- **(지원금액)** 운영기관별 최대 3,000만원(국비100%)

*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

** 단,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내 30% 이내로 계상(선정 후 편성기준 별도 안내)

- **(성과목표)** 성과 목표 및 세부지표, 클러스터 운영기관 및 소공인별 역할 등 제시

작성 예시	①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클러스터 내 소공인 생산 제품의 품질 제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⇒ 공동의 목표 및 성과지표 수립 필요 * (예시) 스마트HACCP(식품안전) 전환 인증 획득 등 ② 클러스터 운영기관이 관련 업종 또는 밸류체인 내 연결고리를 설계·구축하여 생산성 향상 지원 ⇒ 소공인별 역할에 맞는 성과지표 수립 필요 * (예시) 금속업종의 경우 ㉠절단·성형 → ㉢정밀가공 → ㉡열처리·도금 → ㉣제품 생산·판매 공정 간 연계를 통한 매출액 향상 등
------------------	--

*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초과달성 운영기관은 차년도 사업 선정 우대 및 사업비 증액 등 인센티브 제공, 미달성 운영기관의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불가

- **(신청제한)**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제재 확정 및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소공인이 소속된 클러스터 운영기관은 신청 불가

* '26년 사업 선정 및 운영 중 제재 소공인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클러스터 지원금액 전액 반납하고 해당 클러스터에 소속된 소공인의 경우 개별형으로 전환 지원

- ② **(소공인)** 클러스터 공동과제 수행 및 사업장 내 제조공정 혁신을 희망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

※ (신청요건) 직전년도('25년) 매출액 2억원 미만 또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

3. 신청 및 선정 절차

가. 신청절차

- **(신청접수)** 2026년 6월 15일(월) ~ 7월 3일(금) 18:00
- **(신청서류)** 사장님 영상 설명서 등 제출서류 및 가점증빙 서류
- **(신청방법)**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·접수

신청방법

1단계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접속

→ 회원가입(대표자가 회원가입→사업자 정보 입력) 및 로그인

2단계 지원사업신청 → 공고조회 → “스마트 제조지원사업 모집공고(추가)” 선택

3단계 모집공고 확인 및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

4단계 [개인정보동의] [마이데이터제공동의] [자가진단]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

5단계 [신청정보작성] 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[신청서제출] 클릭

참고사항

- ▶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
- ※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※ 사유에 관계없이(시스템 오류 등) 마감시간(18:00 정각) 이후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하오니,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시스템(소상공인24) 문의 : 1644-5302

나. 가점

구분	가점항목(점수)	가점기준	제출서류
1	백년소공인(3)	· 신청일 기준 백년 소공인 지정 업체	· 제출서류 없음
2	스마트역량강화 교육수료(2)	· 2025년 스마트 역량강화교육 수료한 소공인 * 교육 수료 및 수료증 발급 대상이 대표자 명이어야 함	
3	집적지구 소공인(2)	· 도시형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(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 기준)을 영위하는 소공인 * [별첨10] 참고	
4	풍수해 보험 가입자(2)	·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'풍수해 보험'에 가입된 소공인 * 공고마감일이 보험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	· 소상공인 풍수해·지진재해 보험증권
5	여성기업(1)	·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	· 여성기업 확인서
6	장애인기업(1)	· 대표자가 장애인인 업체	· 장애인기업확인서

※ 가점은 신청 마감일(26.7.3) 기준으로 중복 적용 가능하나 **최대 3점**까지 인정

다. 선정절차

개별형 : “자격확인 → 서류평가 → 현장평가” 순 진행

- **(자격확인)** 유형별 신청자격 확인(업종, 매출액, 상시근로자 수 등)
- **(서류평가)**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 심의 → 고득점순 최종선정인원 대비 1.5배수 이내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
- **(현장평가)** 사업에 대한 이해도, 사업장의 스마트화 가능성 등 평가
 - * 평가일정은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통보, 기재된 구축장소에서 평가 실시
- **(최종선정)** 서류평가(30%) + 현장평가(70%) 점수 합산 → 고득점 순 선정
 - * 전국 소공인 지역별 분포도에 따라 광역·시·도 별 선정 규모를 정하여 수혜 소공인 최종 선정
 - ** 개별형 중 패스트트랙 소공인은 서류평가 면제

클러스터형

□ **(운영기관)** “자격확인 → 서류평가 → 공개평가” 순 진행

- **(자격확인)**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확인
- **(서류평가)**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 심의 → 고득점순 최종선정규모 대비 1.5배수 이내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
- **(공개평가)** 운영기관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성과목표 적합성, 과업 추진 계획, 소공인 협업 촉진 의지 및 적극성, 기대 성과 등 평가
 - * 모집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313호, 4.30~6.2) 신청 운영기관과 동시 평가 진행
 - ** 평가 과정은 유튜브 생중계 등 대국민 공개 및 실시간 참여 예정
 - *** 공개평가 시 소속 소공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, 미참석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
- **(최종선정)** 서류평가(30%) +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(70%) 점수 합산 → 70점 이상 운영기관 중 고득점 순 선정
 - * 단, 평가결과 적합한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 규모에 미달하여 선정할 수 있음

□ (소공인) “자격확인 → 선정평가” 순 진행

- (자격확인) 유형별 신청자격 확인(업종, 매출액, 상시근로자 수 등)
- (선정평가) 클러스터 참여에 대한 이해도, 사장님 영상 설명서 기반 사업장 스마트화 가능성 등을 현장에서 평가하여 최종 선정

* 평가결과에 따라 클러스터 최소 소공인 수(10인) 미달 시 운영기관은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라. (지원제외) 신청마감일(‘26.7.3) 기준 아래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구 분	지 원 제 외 사 항
휴·폐업, 부도	· 업체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세금체납	·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참여제한	· 정부사업 참여제한(부정수급 등) 또는 동사업 제재(참여제한) 중인 경우
중복참여	· ‘24년~ ‘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수혜업체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지원사업 및 유사사업 수혜 업체로 선정·참여(지원) 중인 업체 *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
불건전업종	· 도박·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 보건,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
신생업체	· 2026.1.1. 이후 창업한 업체

4. 제출서류

소공인

구분	제출서류	비고
공통 필수 서류	1 ☐ 사장님 영상 설명서 * 1분 30초(최대 2분)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, 구두로 제조공정, 스마트 장비 및 SW 도입 필요성 등 설명	세부 방법 및 가이드 [별첨1] 참고
	2 ☐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* 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※ 3년치 발급 불가 시 발급 가능한 기간만큼 최대로 발급 (단,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, [별첨6]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)	세무서 및 홈텍스 (www.hometax.go.kr) 국번없이 126 문의
	3 ☐ 하드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	모든 공급품목 제출
	4 ☐ 소프트웨어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부	소프트웨어 선택 시 제출
	5 ☐ 도입예정 하드웨어 이미지(사진) * 도입 희망하는 장비의 이미지(사진) 첨부	모든 공급품목 제출
	6 ☐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*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必 * 법인사업자는 '법인' 및 '대표자' 명의 서류 모두 제출	[국세납세증명] 행정복지센터, 정부24(www.gov.kr) [지방세납세증명] 위텍스 (www.wetax.go.kr)
선택서류 (해당시 제출)	7 ☐ 가점증빙서류 * 가점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, 5p 가점항목 참고	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

*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

** 마이데이터 동의하여도 조회 불가할 경우에 한해,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

*** 개인정보 제공동의서, 마이데이터 제공동의서, 자가진단항목은 시스템으로 입력

※ [참고]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아래(8~11번) 추가 서류 제출 필수

구분	제출서류		
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	8	☐ 사업자등록증명원 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)	
	9	택 1	▶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
			▶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			▶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+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
	10	☐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(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)	
	11	☐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) ▶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	
		☐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(택 1) ▶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▶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 ▶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▶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	

* 마이데이터 동의하시면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. (동의시 제출칸 없음)

클러스터형 운영기관

구분	연번	제출서류	비고
필수 서류	1	☐ 클러스터형(운영기관) 사업계획서	[별첨3] 양식 활용
	2	☐ 사업자등록증명원	1개월 이내 발급분
	3	☐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* '법인', '대표자' 서류 모두 제출 *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必	[국세납세증명] 행정복지센터, 정부24(www.gov.kr) [지방세납세증명] 위텍스(www.wetax.go.kr)
	4	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* 제출용, 말소사항 포함 제출	1개월 이내 발급분
추가서류 (해당시 제출)	5	☐ 정 관 (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만 해당)	해당시 필수 제출
	6	☐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(택 1) ▶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▶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 ▶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▶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	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

*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소상공인24 시스템으로 작성

**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5. 의무사항 (신청전 필독)

- 지원 장비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 및 식별 관리를 위해 스마트 제조 지원 장비 인증 현판(공단 제공) 부착 및 유지 의무가 있음
- 선정업체는 협약기간(5년) 지원장비* 보유 및 사용 의무가 있으며, 공급업체는 협약기간(5년) 지원장비의 유지보수를 필수 제공해야 함
 - * 장비의 정상가동 여부 및 기초데이터 수집을 위한 IoT장치 부착 예정(공단 제공)
- 협약기간(5년) 발생하는 스마트장비 운용을 위한 소모품 등 기타 소요 비용은 추가 지원하지 않음(별도 자부담)
- 선정 업체는 선정 통보 후 지정 기간에 현장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미수료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선정 업체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, 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(이행보증증권 비용 별도 자부담)
-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지원하며, 세액 및 부가가치세(VAT) 선정 업체가 별도 부담 (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)
- 선정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내 도입이 완료되어야 하며, 미완료시 협약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음
- 선정 업체 및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통해 사업 및 교부요청, 사업비 집행을 하여야 함
- 선정 업체 및 운영기관은 지정된 회계감독기관에 사전 서류검토 및 승인 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, 무단 사용 시 사업비 미인정 될 수 있음
- 협약기간(5년) 내 도입장비 판매, 사업자 폐업 및 미사용 등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환수 예정
- 선정 업체는 사업장의 스마트전환을 위한 '소공인 전담 코디네이터'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(별도 자부담 없음) 미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- 선정 업체는 협약기간(5년) 동안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* 및 사업 성과분석(서류 제출 등) 조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함

* 협약기간 지원장비 정상사용 확인을 위한 수시(불시) 현장점검 포함

- 불응 시 협약서 및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재(환수 등) 가능

6. 유의사항 (신청전 필독)

가. 공급기업

① 공급기업 매칭

- (POOL 제공) HW 공급기업은 사전등록*된 공급기업 내에서 선택가능하며 SW 공급기업은 자율 섭외 가능

* 26년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장비 공급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사전 등록 완료

- (자율매칭) 사업신청 시 POOL에 등록된 공급기업 중 자율 선택 매칭

* 공급기업 및 장비 정보는 소공인 사업 신청 시 확인 가능(소상공인24)

※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급기업에 대한 품질, 신뢰도 등을 보증·인증하지 않고, 소공인의 공급기업 선택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.

② 공급기업 역할

- (장비요건) 장비 내 데이터 처리 기능(또는 시스템) 또는 IoT 센서(데이터 수집 장치) 부착*을 통해 공단이 제공하는 오픈 API에 자동 연계 가능한 장비
- 장비 가동 및 성과 확인, 실시간 장비 위치 등 장비 내·외 기초 제조데이터 수집 예정

* 공급기업 자체 제작 솔루션과 연계하지 않음

- 공단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, 지원장비에 IoT 센서 부착 예정

* 배포되는 센서 및 지정전문가 외 소공인 및 공급기업에서 임의부착 불가

- PLC(데이터 처리 기능) 탑재 장비 등의 경우, 장비 내부에 IoT 센서 부착 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 내부 접근 및 센서 설치에 적극 협조 必
- (유지보수) 장비 구매지원으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5년간 관리 → 5년간 유지보수 필수 제공(최소 2년 이상 무상 권고)

나.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외 제3자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며, IP검증 등을 통해 다수 아이디의 동일 IP사용이 적발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선정 후, 신청한 HW 및 SW에 대한 원가산정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보고서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 및 삭감될 수 있음
- 접수한 사업계획서는 AI기반 사업계획서 대조시스템을 통해 중복 여부 검토예정이며, 중복으로 판정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선정된 클러스터 운영기관은 소공인 최소 10개사 ~ 최대 20개사를 모집 및 관리해야 하며 소공인은 공단에서 평가(자격확인, 선정평가)를 통해 최종 미선정 될 수 있음
 - * 소공인 탈락에 따라 클러스터 최소 소공인 수 미달 시 운영기관은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클러스터 운영기관이 모집한 클러스터형 소공인은 본 공고 기간 내 동시 접수해야 하며, 명단 미일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클러스터 운영기관이 신청 시 제출한 소공인 명단은 접수 후 변경 일체 불가
 - * 단, 기 모집공고에 신청한 운영기관에 한하여 최대 인원(20명) 한도에 맞춰 참여 소공인을 추가하는 경우는 허용
- 소공인 업체 대표자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신청 시 지원유형 선택에 유의(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)해야 하며 잘못 선택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
- 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보완 불가(별도 보완연락 없음)하며, 필수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-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·공공기관에서 유사 사업에 선정·참여 확인시 선정취소, 환수 및 제재 등 조치할 수 있음
- * 선정 및 평가 과정 도중 타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수혜 불가
- 제출서류(자가 체크리스트, 사업계획서 등) 내용 중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
- 서류상 개인정보 기재착오, 주소 오기재, 연락두절, 신청인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- 선정 소공인의 역할 및 의무는 추후 협약서, 운영지침 등에 따름
- 사업 참여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역량진단을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, 우수/제재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시 할 수 있음
- 공단은 청렴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특수 관계자 거래, 폐이백 등 부정행위(별첨11)를 금지하며 확인시 환수, 제제, 형사고발 등 조치 가능
- 제3자 부당개입 및 부정수급 신고처 : smart112@semas.or.kr

7. 문의처

구 분			문 의
사 업 망 의	중소기업통합콜센터		(국번없이) 1357
	북부권	서울, 강원, 인천	국제경영원 / 02-6336-0542
	경기권	경기도	한국능률협회 / 02-3274-9721, 9722
	동부권	경상도, 부산, 울산, 대구	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/ 02-2230-2179, 2180
	서부권	전라도, 광주, 제주, 충청도, 대전, 세종	한국산학연협회 / 044-410-3321, 3322
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		042-363-7912~6
소상공인 24 시스템 장애 문의			1644-5302